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하여 지방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안 제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교부 시, 예산 또는 예산안을 회계별·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

나. 실적보고 제출기한 위반 시 지방보조금 삭감기준(안 제9조제4항 신설)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삭감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다.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및 감사보고서 작성·제출(안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11조의2 신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 계약을 체결한 즉시 감사인 선정 사실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안 제11조의3 신설)

지방보조금 총액 5백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정보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보조금 삭감기준 마련
마.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안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별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수행배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25. ~ 12. 5.) 예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한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담하기로 한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 항목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법 제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계별·사업별로 구분된 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
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보고서가 제출
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2.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보고서가 제
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10
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
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100분의 50 이
하의 범위에서 삭감

제10조제목에서 “실적”을 “정산”으로 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즉시 그 선정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서류
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 사업
연도에 선정한 감사인과 동일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서
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

지 감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감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1조제4항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따른 공시 등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시한 경우는 공시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 제10조의 교부 결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제12조제3항에서 “중요재산의 현황”을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으로 한다.

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사업비 중 지방보조금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7항”으로,

“지방보조사업자등을”을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를”로,
“제한하는”을 “제한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보조사업자등이”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로, “교부 여부”를 “교부 또
는 지급 여부”로, “지방보조사업자등의”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
정계약업체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
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다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
급 제한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부정계약업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 사업

2.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업

별표 2부터 별표4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별표2를 별표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1호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2호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3년 이내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3호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2년 이내

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별표 3]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기준 (제19조제3항 관련)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지급 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3항 제1호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3항 제2호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3년 이내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3항 제3호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 이내

비고: 제2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이거나, 제3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등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별표 4]

부정계약업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
(제19조제5항 관련)

처분사유	수행 대상 배제 기간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
2.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3년 이내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2년 이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u>「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u> 1. ~ 4. (생략) <u><신 설></u>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u>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한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담하기로 한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 항목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1. ~ 4. (생략) <u>② 법 제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u>

<신 설>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생략)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생략)

④ <신 설>

제4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계별·사업별로 구분된 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현행과 같음)

② -----

----- 국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u>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u> <u>2.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u> <u>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u>
제10조(<u>실적</u> 보고서의 검증) ①·② (생략)	제10조(<u>정산</u> 보고서의 검증)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생략) <u><신 설></u>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즉시 그 선정 사실을</u>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 사업연도에 선정된 감사인과 동일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⑥·⑦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1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감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②·③·④·⑤ (생략)

<신설>

<신 설>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1조제4항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

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따른 공시 등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시한 경우는 공시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 제10조의 교부 결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다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부정계약업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3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업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연 락 처	(044) 205 - 3769